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재난·재해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함
- 과 단위 사무 수행의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과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국 명칭 변경
 - 안전행정부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행정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
- 기구개편
 -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로 분과
 -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두고 사무를 분장함
 - 건설과를 안전재난과와 건설과로 분과
 - 안전재난과는 안전행정국 소관으로, 건설과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두고 사무를 분장함

○ 분장사무 조정

- 새마을과 민방위 사무 → 안전재난과
- 건설과 재난관리 사무 → 안전재난과
- 사회복지과 청소년관련 사무 → 새마을과
- 상위법 폐지에 따라 시민만족과 인장업 관련 사무 삭제
- 기타 업무분장 명확화
 -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중 강변체육공원 조성개발 업무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예산조치 : 2013년 1회 추경시 예산 반영
- 합 의 :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과 합의 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재난·재해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,
- 과 단위 사무 수행의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과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전행정부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 변경
-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로 분과, 건설과를 안전재난과와 건설과로 분과를 통한 기구개편
- 과 단위 사무 수행의 적정 규모를 고려한 과별 분장사무 조정을 규정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의거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

재난·재해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,

- 과 단위 사무 수행의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과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